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2025. 9. 1.)

2025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5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97
----------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나. 제 출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2.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0,038,219	19,112,921	925,298	4.84%
세외수입	269,608	269,608	0	0.00%
경상적세외수입	91,947	91,94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91,229	91,229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6,432	86,432	0	0.00%
조정교부금등	18,578	18,578	0	0.00%
보조금	19,276,888	18,351,590	925,298	5.04%
국고보조금등	7,194,598	6,767,537	427,061	6.31%
시·도비보조금등	12,082,290	11,584,053	498,237	4.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3,145	473,145	0	0.00%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2,721,060	31,297,525	1,423,535	4.55%
인건비	4,327,344	4,327,344	0	0.00%
물건비	1,541,291	1,541,291	0	0.00%
경상이전	24,865,925	23,442,390	1,423,535	6.07%
자본지출	133,402	133,402	0	0.00%
예비비및기타	1,853,098	1,853,098	0	0.00%

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2,721,060	31,297,525	1,423,535	4.55%
보건행정과	5,488,112	5,488,112	0	0.00%
위생과	975,030	975,030	0	0.00%
건강동행과	24,593,613	23,170,078	1,423,535	6.14%
의약과	1,664,305	1,664,305	0	0.00%

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32,721,060	31,297,525	1,423,535
건강동행과	24,593,613	23,170,078	1,423,53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66,178	230,727	135,451
일반보전금	335,212	199,761	135,45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35,212	199,761	135,451
1)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335,212	199,761	135,45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576,169	1,288,085	1,288,084
민간이전	2,576,169	1,288,085	1,288,084
의료 및 회복비	2,576,169	1,288,085	1,288,084
1)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2,576,169	1,288,085	1,288,084

3.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5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총 200억 3,8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1,292만 1,000원보다 9억 2,529만 8,000원(4.84%) 증액되었음.
-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총 327억 2,106만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9,752만 5,000원보다 14억 2,353만 5,000원(4.55%) 증액되었음.

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보건소는 ‘건강동행과’ 에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기정액 231억 7,007만 8,000원에 14억 2,353만 5,000원 증액된 245억 9,361만 3,000원으로 약 6.14% 증액 편성함.
- 사업별로 살펴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545만 1,000원(67.81%) 증액 편성하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12억 8,808만 4,000원(100%) 증액 편성되었음.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00억 3,8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529만 8,000원(4.84%) 증가하였음.
- 세입 증액분은 전액 보조금으로 9억 2,529만 8,000원이며, 이는 국가 및 서울시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임.

- 보조금 증액 상세내역은 건강동행과 소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국비 40,635천원, 시비 47,408천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국비 386,426천원, 시비 450,829천원)’ 임.

나. 세출예산

-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원사업 활성화를 사유로 건강동행과 소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¹⁾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혼자를 포함한 관내 거주 20세에서 49세까지의 남녀 175,073명을 대상(2025. 7. 기준) 주기별²⁾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임. 지원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로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로 최대 5만원임.

1)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추경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반영한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0,635천원, 시비 47,408천원, 구비 47,408천원 총 1억 3,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음(국·시·구 : 30%, 35%, 35%).
- 당초 본예산 1억 9,976만 1,000원은 사실상 전액 집행되어 5월 1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약 2개월 동안 1,951건의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국민신문고 및 유선 문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났음. 이는 예산 소진 속도에 비해 수요 예측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됨.
- 산출된 인원 321명은 전체 대상자 대비 소규모로 보이지만, 이는 불용액 방지 및 예산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소 소요분을 산정한 결과로 합리성이 인정됨. 특히 이미 반려된 건수(1,951건)와 향후 수요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은 사업 재개의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국·시·구 매칭 사업임. 본 사업은 감염 취약 계층의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그러나, 2025년도 본예산은 재원 부족으로 총 소요액의 약 50%인 12억 8,808만 5,000원(국 386,425천원, 시 450,830천원, 구 450,830천원)만 편성함.

- 이에 확정내시에 맞게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편성하지 않은 12억 8,808만 4,000원(국비 386,426천원, 시비 450,829천원, 구비 450,829천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임.
- 그동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총 소요액의 절반 수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지금까지 사업이 축소 또는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중보건 정책이 단순히 자원 부족이나 타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소홀하게 다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구 보건 행정의 중대한 착오로 사료됨. 향후에는 사전 예방 단계에서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촉구가 필요함.
-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며, 사업 집행 과정의 추가 소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국·시비 보조율 변동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임. 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편성된 것으로, 재정계획의 면밀성이 부족했음을 증명하고 있음.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재정 운영과 계획적 예산 편성이 요구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김 자 영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